

교육과정평가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7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육과정평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
2. 교육 선진화 모델 개발
3.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
4. 교육성과 측정도구 개발
5.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평가
6. 삭 제 <2018.5.31.>
7.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
8. 교육만족도(학생, 학부모, 산업체 등) 조사
9. 학생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통합관리
10. 삭 제 <2018.5.31.>
11. 그 밖에 교육과정평가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 및 행정인력)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, 행정직원,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평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기초융합교육원장, 교무부처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융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교육혁신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재정 및 결산

제9조(재정) 센터의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국고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예·결산) 센터의 예·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